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4,004,223	29,220,127
일반회계	876,436,173	26,293,085
특별회계	97,568,050	2,927,042
공기업특별회계	36,210,828	1,086,32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210,828	1,086,325
기타특별회계	61,357,222	1,840,7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3,267	22,298
자활기금특별회계	474,747	14,242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139,000	334,1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3,678	6,710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57	29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953,117	58,594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7,197	6,516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1,047,600	31,428
수질개선특별회계	45,557,659	1,366,7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